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3. 11(목)
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0. 2. 1
- 나. 제안자 : 김용근·최만용·이명숙·윤지상 의원 외 5인
- 다. 회부일자 : 2010. 2. 1
- 라. 상정일자 : 2010. 3. 3
 - 제안설명 :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의원
 - 검토보고 : 산업전문위원 김복기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장인정신이 투철하며 공예기술 전승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공예 산업 및 기능발전에 크게 공헌한 우수기능인을 대상으로 명장을 선정 지원하여
- 공예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전문분야에 정진하도록 하며, 공예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함.

나. 주요내용

- 명장은 도자(녹청자), 금속, 화각, 장신, 나전칠기, 목공예 분야 등을 포괄하여 선정함.(안 제3조)

- 명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을 선정함(안 제4조)
- 명장의 자격요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우리시의 공예인 중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기술 전승과 공예산업 및 기능발전에 크게 공헌한 우수기능인을 「인천광역시 공예명장」으로 선정·지원함으로써, 우리시의 공예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안 제3조에서는 공예명장의 선정분야를,
 - 안 제4조에서는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명장의 자격요건과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명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과 관련되거나 참고한 법령은 「문화재보호법」, 「기능장령법」,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등으로,
 -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능장령법」을 일부 참조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 이미 국가에서 「기능장령법」에 의거 ‘기능인’, ‘명장’, ‘우수지도자’ 등을 선정하고 있고, 해마다 전국기능인경기대회에서 우수한 기능인을 선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 우리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시만의 공예명장을 선정·지원코자 하는 것은 지역 공예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바,

- 안 제3조(선정분야)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장의 선정분야는 전국공예 대전 심사 및 출품기준에 적합하도록 ‘목·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완초, 장신구, 화각, 기타 분야’ 등을 포괄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 안 제4조(명장의 선정)에서는 무분별한 명장 신청예방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항을 신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5조(명장의 자격요건)에서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명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명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로, 제1호의 “20년 이상 공예산업 분야에 직접 종사한 자로 인천광역시에서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거주한 자”를 “20년 이상 공예산업 분야에 직접 종사한 자로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0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 마찬가지로, 안 제6조(예우 및 지원) 제3항의 “명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를 “명장의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항에서 명장 선정에 따른 이의제기 등 합리적인 선정절차 정립을 위해 “당해연도 명장 선정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를 “당해연도 명장 선정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아울러 명장의 신청절차, 예우 및 지원 등에 대한 기준과 명장증서의 제작안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본 조례 제정후 조속히 조례 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박희경 위원

- 공예명장 선정분야중 인천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인 강화 화문석 분야가 제외된 사유는? 인천의 대표적인 공예분야로는 서구의 녹청자, 강화의 화문석임.

○ 한도섭 위원장

- 현재 인천시에 본 조례 이외의 명장 선정 제도가 있나? 추후 공예 명장 지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소요예산은?
-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공예명장 예상 대상자 수는?

○ 강창규 위원

- 공예명장 선정후 지원되는 금전적 지원액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문화재 분야와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조치

< 답 변 >

○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 본 조례안은 인천의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 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강화 화문석 분야 등은 추가 지정이 가능하며 수정안에 완초 분야로 지정되는 사항임.
- 현재 명장으로 지정한 사례는 없으며 공예명장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하고 조례제정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임.
- 타시도 사례를 보면 공예명장으로 인천시에 10명, 여주시에 3명 지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위원회 구성은 선정분야에 따라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가를 위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인천시 공예명장으로 지정된 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대략 월 50만원 범위내로 책정할 계획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한도섭, 박희경, 강창규, 김을태 위원

6. 수정안 요지

- 안 제3조에서 공예명장 선정 분야인 “도자(녹청장), 금속, 화각, 장신, 나전칠기, 목공예 분야”를 “목·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완초, 기타 분야”로 수정
- 안 제4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에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를 신설하며,
- 안 제5조의 “명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명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1호의 “인천광역시에서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거주한 자”를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0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수정
- 안 제5조 제4호에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에서 지정된 무형 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자”를 신설하고, 안 제6조제3항의 “상실하게”를 “취소”로 수정
- 안 제7조 제3항의 “명장 선정과 동시에”를 “명장 선정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종료되면”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 4명)

8. 기타 특이사항

○ 없음

-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중 “도자(녹청장), 금속, 화각, 장신, 나전칠기, 목공예 분야”를
“목· 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완초, 기타 분야”로 한다.

안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안 제5조 중 “명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명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로 한다.

안 제5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에서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거주한 자”를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0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안 제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자

안 제6조제3항 중 “상실하게”를 “취소”로 한다.

안 제7조제3항 중 “명장 선정과 동시에”를 “명장 선정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종료되면”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u>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3조(선정분야) 명장은 <u>도자(녹청자), 금속, 화각, 장신, 나전칠기, 목공예 분야</u> 등을 포괄하여 선정하되 당해연도 선정 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p> <p>제4조(명장의 선정)</p> <p>① (생략) 〈신설〉</p> <p>② (생략)</p> <p>제5조(명장의 자격요건) 명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0년 이상 공예산업 분야에 직접 종사한 자로 <u>인천광역시에서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거주한 자</u></p> <p>2. ~ 3. (생략) 〈신설〉</p> <p>제6조(예우 및 지원)</p> <p>① ~ ② (생략)</p> <p>③ 명장으로서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장의 자격을 <u>상실하게</u>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정안과 같음)</p> <p>제3조(선정분야) ----- <u>목·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완초, 기타 분야</u>-----</p> <p>-----</p> <p>-----</p> <p>제4조(명장의 선정)</p> <p>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u>군수·구청장의 추천을</u> 받아야 한다.</p> <p>③ (제정안 제2항과 같음)</p> <p>제5조(명장의 자격요건) 명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 ----- ----- <u>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0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u></p> <p>2. ~ 3. (제정안과 같음)</p> <p>4. 「<u>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u>」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자</p> <p>제6조(예우 및 지원)</p> <p>① ~ 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 ----- ----- <u>취소</u> ----- -----</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p> <p>① ~ ② (생략)</p> <p>③ 위원은 공예산업 분야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해연도 <u>명장</u> 선정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p> <p>④ (생략)</p>	<p>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p> <p>① ~ 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 ----- ----- <u>명장</u> <u>선정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종료되면</u> -----.</p> <p>④ (제정안과 같음)</p>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예발전과 이에 종사하는 공예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하도록 하며, 공예인의 지위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 분야 최고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 공예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공예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정분야) 명장은 목·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완초, 기타 분야 등을 포괄하여 선정하되 당해연도 선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제4조(명장의 선정) ①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공예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명장을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명장의 선정인원·선정기준 등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명장의 자격요건) 명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0년 이상 공예산업 분야에 직접 종사한 자로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 10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2.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자
- 3. 이 조례에 의한 동일 분야의 명장 또는 「기능장령법」에 따른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자
- 4.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명장”의 칭호를 부여하고 명장증서를 수여한다.

② 사업장에 명장 인증서를 부착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명장으로서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장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명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예산업 분야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해연도 명장 선정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명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
- 2.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